전주양현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시행 2021.3.1.] [2021.2.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양현초등학교(이하 "양현초"라 한다) 출결관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양현초 학생의 출석상황 및 체험학습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적용한다.

제3조(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2. 체험학습을 참고),「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게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 형제, 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양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나) 3일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제)**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제4조(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 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양식 3,4,5]**

◇ 일과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나.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운영절차

가.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나.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양식 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양식 4]교외체험통보서를 통보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양식 5]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라.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양식 3]
⇩	⇩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양식 4]
⇩	⇩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양식 5]

◇ **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 및 각 학급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

제5조(규정외) 이 규정외 사항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전라북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르며, 감염병(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는 [별지 1]을 따른다.

부칙 <2019.3.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출결 관리[감염병(코로나19) 관련]

☐ **등교중지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대상 학생별 정의**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 참조

-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참고 9]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단, **학교의 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양식 1]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 학년 반 번
이름 :

위의 학생을 아래와 같이 경조 행사에 참석시키고자 하오니 (참석하였으니) 출석 처리토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참여 기간 : 2021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 ) 일간

2.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 형제, 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 해당되는 행사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장소 :

※필요시 기타 확인서(장례식장 확인서 등) 첨부

2021 년 월 일
보호자 : ㊞
담 임 : ㊞

전주양현초등학교장 귀하

[양식 2]

결 석 계

전주양현초등학교

학 생 명	제 학년 반 번 이름 :
기 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일간)
결석 사유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단기결석은 ① 결석계만 제출
2) 3일이상의 장기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와 + ②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2021 년 월 일

보호자 : ㊞

담 임 : ㊞

전주양현초등학교장 귀하

[양식 3] 사전(3일전) 작성 및 제출 5년보관(보호자용)

결재	담 임	교 무	교 감
			(전 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 가 자	학년	반	번	성 명	전화	비 고

기 간	2021년 월 일( ) ~ 2021년 월 일( ) (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 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 명	전 화
체험학습 주 제				
학습내용				
확인사항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전주양현초등학교장 귀하

[양식 4]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신청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허가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누적사용기간 /인정기간	일 /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전주양현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인)

보호자님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양식 5]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5년보관(학생용)

결재	담 임
	전 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누 가

전주양현초등학교	제 ( )학년 ( )반 ( )번	이름 :

언 제

기 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장소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어떻게	
소 감	

전주양현초등학교장 귀하